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조·장치 변경’이라는 용어가 ‘튜닝’이라는 용어로 개정된 사항(법률 제12217호, 2014.1.7.)이 미반영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9조 및 별표 2 개정)

나.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으로 규정(별표 2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OO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 중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을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방향지시등”을 “방향지시등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후사경·창닢이기”를 “후사경·창닢이기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속도계·주행거리계”를 “속도계·주행거리계 및”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을 “자동차의 튜닝”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노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쿠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치지 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 4항제13호의 4	100
--	-------------------------	-----

별표 2 제2호포목(중전의 토목)의 위반행위란 2) 중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생 략)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전조등 · 번호등 · 후미등 ·</u> <u>제동등 · 차폭등 · 후퇴등</u> 기타 등화장치	14. <u>전조등 · 번호등 · 후미등 ·</u> <u>제동등 · 차폭등 · 후퇴등</u> 및 -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u>방향지시등</u> 기타 지시장치	16. <u>방향지시등</u> 및 -----
17. <u>후사경 · 창담이기</u> 기타 시 야를 확보하는 장치	17. <u>후사경 · 창담이기</u> 및 ---- -----
17의2. (생 략)	17의2. (현행과 같음)
18. <u>속도계 · 주행거리계</u> 기타 계기	18. <u>속도계 · 주행거리계</u> 및 --- --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 ④ (생 략)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u>자동차 구 조 · 장치의 변경</u> 승인에 관한	⑤----- ----- ----- ----- <u>자동차의</u> <u>튜닝</u> -----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 탁한다. ⑥ ~ ⑪ (생 략)	----- -----. ⑥ ~ ⑪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40